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18. . . (제 회)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18.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살충제 계란사건('17.8)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존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1) 친환경농어업의 목적인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환경보존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 재설정

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조건 추가(안 제20조)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
- 2)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 신청 횟수 제한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정지 조건 추가(안 제26조의2)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및 재심사 등의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

라.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 추가 및 벌금 기준 구체화(안 제26조의3)

- 1)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 2) 임원 결격사유에서 소액 벌금은 제외되게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

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조건 추가(안 제29조)

- 1)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바.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 신설(안 제31조, 제49조)

- 1)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마련

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마련(안 제54조의2)

- 1)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용 혼란·피해 방지와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표시 사용 허용

아. 인증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 시 벌금 등 벌칙, 반복적 인증 취소자의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 분석자료 등 미보관 시 과태료 등 부과(안 제60조, 제62조의2, 제62조)

- 1) 인증심사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증관련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벌금 등 벌칙 부과(안 제60조)
- 2)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안 제60조의2)
- 3) 시험분석자료 미보관, 인증결과 거짓보고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62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를 “생물의 다양성, 생물적 순환, 토양의 생물활동 증진 및 향상을 통해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항균제”로,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로,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을 “최소화하여 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토양과 물, 생물 등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공존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생산관리방법으로서 제19조제2항”으로, “준수하고,”를 “준수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활성 촉진 및 비옥도 유지를 위해 지역조건에 적합한 물질순환에 의존하여”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육성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우고”를 “제5조의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고”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된 자

1의3.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자 제20조제6항(중전의 제6항) 중 “제한”을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횟수 등 제한”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연장에”를 “연장 심사 및 이에 대한 재심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를 명할”을 “정지 및 시정 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업”을 “폐업, 인증포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력과 시설”을 “인력, 조직,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를 “자격 취소,”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를 “자격정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심사,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제20조 또는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3제2호 중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3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누락없이 사실대로 기재·보고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의 임원인 경우에는 인증심사 및 갱신 등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제30조제7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품,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조사

제31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으로,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을 “유통사업자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제조·유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인증품 등”으로,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를 “인증품 등의 판매정지·판매금지”로,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를 “변경 및 그”로, “수 있다.”를 “수 있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등에게 사후관리 결과를 사전통지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압류조치·공표 및 제6항에 따른

결과 사전통지, 재검사 기준·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와 “사업장”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인증사업자 또는”을 “인증품 등의 재검사, 인증사업자 또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설 및 장비를”을 “인력, 시설, 장비, 시험관리 규정 등을”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1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와 “사업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 본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분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시험의 신청 및 분석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을”을 “처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결과 공시의”를 “결과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결과 공시”로 한다.

제45조제3호 중 “신청·심사 및”을 “신청·심사,”로, “관한”을 “관한 자료, 공시취소 등 처분내역 및 품질관리지도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사후관리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한 때에는 공시사업자 등에게 그 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시기관은”으로, “판매금지,”를 “공시취소, 판매금지”로, “사용정지”를 “사용중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도록 요청할 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압류조치 및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공표를 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제5항에 따른 처분 및 압류, 공표”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와 “사업장”은 “공시기관”으로 본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3으로 하고,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 제한) ① 이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친환경’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품목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시 사용제한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를 “제20조제6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변경 또는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54조의2”로, “인증 표시”를 “친환경’문구 등·인증 표시”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제1호와 2호에 해당하여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27조제3호”를 “제27조제1항제3호”로, “제45조

제3호”를 “제41조의3제3호, 제45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4호”를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결과 또는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20조제6항의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횟수 제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인증취소를 받은 횟수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인증취소 횟수와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속 인증신청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친환경농어업"이란 <u>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u></p> <p>2. (생 략)</p> <p>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u>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 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u></p> <p>4. ~ 9. (생 략)</p> | <p>제2조(정의) ----- -----.</p> <p>1. ----- <u>생물의 다양성, 생물적 순환, 토양의 생물 활동 증진 및 향상을 통해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항균제 -- 아니하거나, -- 최소화하여 건강 -----</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토양과 물, 생물 등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공존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생산관리방법으로서 제19조제2항-- 준수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활성 촉진 및 비옥도 유지를 위해 지역조건에 적합한 물질순환에 의존하여 --.</u></p> <p>4. ~ 9. (현행과 같음)</p> |

<신 설>

2. 3.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따라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된 자

1의3.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자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횟수 등 제한-----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연장 심사 및 이에 대한 재심사 -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 정지 및 시
정명령을 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폐업, 인증포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 인력, 조직,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자격취소,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6.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 1. (생략)
- 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 자격정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

- 1. ~ 4. (현행과 같음)
- 5. 인증심사,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업무-----

6. (현행과 같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제20조 또는 제21조, 제27조,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

- 1. (현행과 같음)
- 2. ----- 100만원 이상-----

3. 제26조의2제3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생략)
<신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누락없이 사실대로 기재·보고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의 임원인 경우에는 인증심사 및 갱신 등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 6. (생략)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8. (생략)

- 제5호까지, 제10호-----
-----.

1. (현행과 같음)

1의2. -----
----- 100만원 이상 -----

2. ~ 6. (현행과 같음)

7. -----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

8.·9.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

8.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
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
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생략)

②·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
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
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
후관리) ① -----

1. 인증품,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
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
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조
사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

----- 유통사업자와 제2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제조·유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인증품 등-- 인증품 등의 판매정지·판매금지-- 변경 및 그 -- 수 있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등에게 사후관리 결과를 사전통지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압류조치·공표 및 제6항에 따른 결과 사전통지, 재검사 기준·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 ④ (생략)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와 "사업장"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인증품 등의
재검사, 인증사업자 또는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신설>

-- 인력, 시설, 장비, 시험관리 규정 등을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1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와 “사업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 본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

1. 시험분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시험의 신청 및 분석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

----- 처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
-----.

1. ~ 4. (현행과 같음)
5. ----- 결과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후

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5. (생략)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③ (생략)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관리의 결과 공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
-----.

1. 2. (현행과 같음)

3. ----- 신청·심사, -----
----- 관한 자료, 공
시취소 등 처분내역 및 품질관
리지도 등에 관한 -----

4. 5. (현행과 같음)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사후관리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한 때에는 공시사업자 등에게 그 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시기관은 -----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② (생략)

<신설>

<신설>

----- 공시취소,
판매금지 -----

----- 사용중지-----

----- 요청할 수 있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압류조치 및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공표를 할 수 --.

⑥ 제5항-----

⑦ 제5항에 따른 처분 및 압류, 공표-----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

<신 설>

제54조의2 (생 략)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 2의2. (생 략)
-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증사업자”와 “사업장”은 “공시기관”으로 본다.

제54조의2(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 제한) ① 이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친환경’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품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시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 (현행 제54조의2와 같음)

제56조(수수료) ①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 3. 제20조제6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5. (생략)

②·③ (생략)

제57조(청문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3. ~ 4의3. (생략)

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변경 또는 제21조 제3항 ----

4.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4의3. (현행과 같음)

5. -----
----- 포함한다) 및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6. ~ 15. (생략)

② (생략)

<신설>

제54조의2-----

--- ‘친환경’문구 등·인증 표시

6.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24조제1항제1호와 2호에 대하여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신설>

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27조제1항제3호 -----

----- 제41조

의3제3호, 제45조제3호 -----

4.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항제4호-----

7의2.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결과 또는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8. ~ 10. (생략) ② (생략) | <u>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친환경농업과 | |
| 연 락 처 | 044-201-2432 |